본 자료는 2021.1.2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통신·방송은 1.20.(수) 12:00부터 보도 가능)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보도자료(총14매)

2021. 1. 20. (수)

▣ 자료 문의 : 과실분석팀 곽수경 팀장 3702-8605 / 홍보팀 류종원 팀장 3702-8582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한 우회전 사고, 100:0 입니다

– 손해보험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공개 –

- **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
- 신규 유형은 ①**인명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 ②**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③**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보완**에 **중점을 둠**
- 동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함

*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됨

** '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시 비정형 기준 23개 포함

□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하였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음

○ 아울러,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함

□ 특히 금번 신규 기준은 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②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 아울러 ③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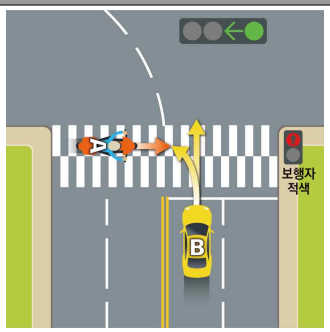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일방과실(100:0)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A차량 :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 •B차량 : 녹색신호에 직진하다 A와 충돌
과실 해설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 일방과실(100:0)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A이륜차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B차량 :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좌회전)
과실 해설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으로 정함

□ **협회**는 동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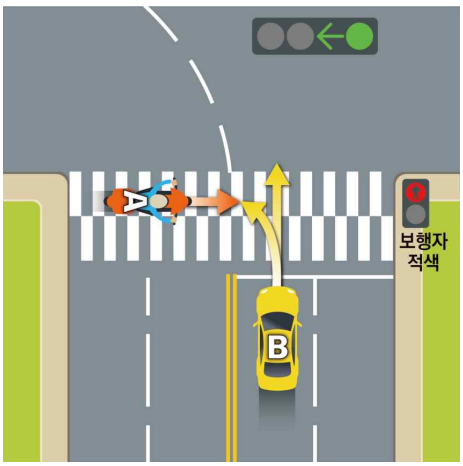
○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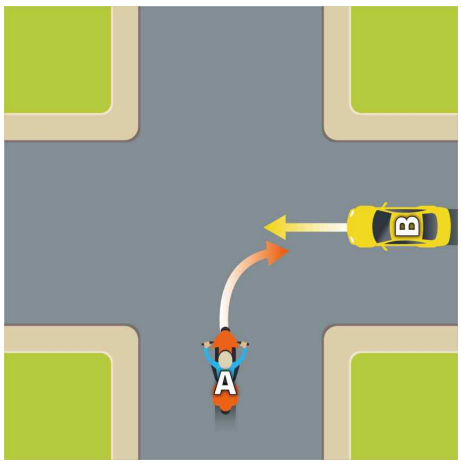
※ 별첨 : 1.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20.12.) 1부.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1부. 끝.

별 첨 1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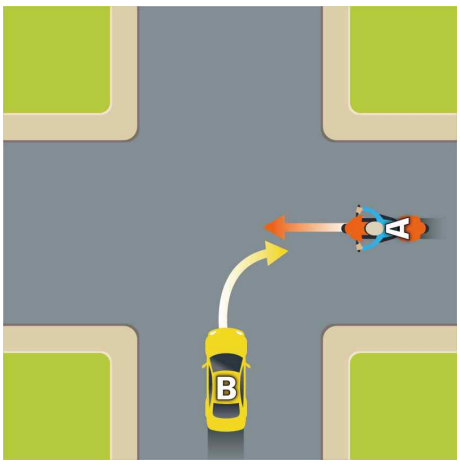
1 인명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적색)횡단 이륜차 vs 신호에 따라 직진(좌회전)하는 차량 간 사고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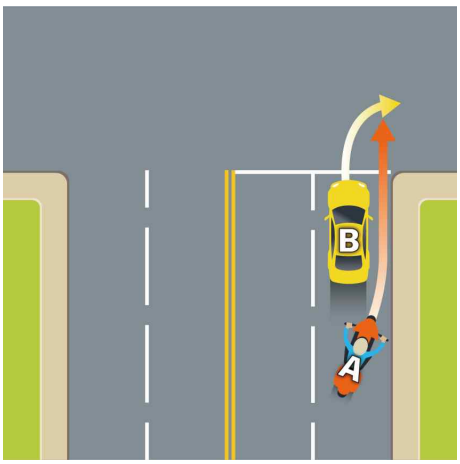
우회전 이륜차량(A) vs 우측 직진 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A이륜차와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A이륜차가 우회전하는 중이므로 직진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 양차량의 과실을 60:40으로 정함

우측 직진 이륜차량(A) vs 우회전 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20 : B 80**
사고 상황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와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우회전하면서 직진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또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20:80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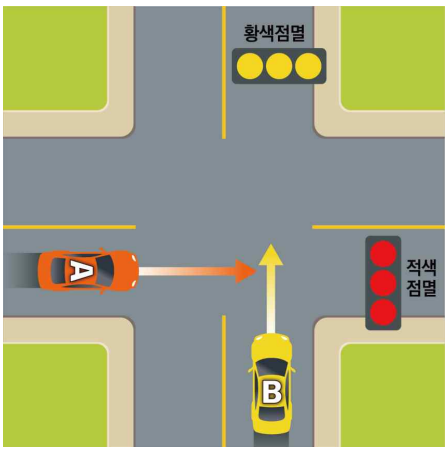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량 vs 선행 우회전 차량 간 사고



기본 과실	**A 90 : B 10**
사고 상황	동일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운행하다 선행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B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추월하려던 후행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동일차로 내에서 선후행중에 선행중인 B차량으로서는 A이륜차의 진입을 미리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우측으로 급진로 변경·추월하려는 A이륜차의 과실이 무거움. 그러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B차량도 미리 도로의 우측으로 접근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며, 진입한 A이륜차에 주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90:1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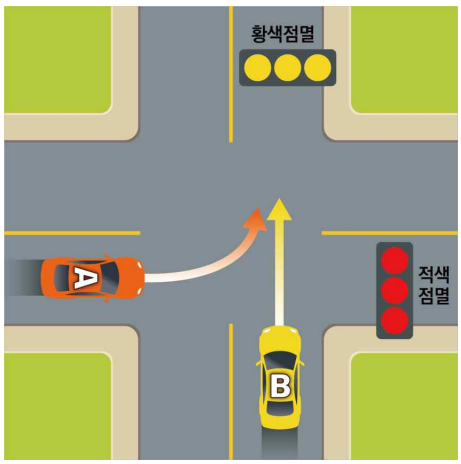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적색점멸 직진차량(A) vs 황색점멸 직진 차량(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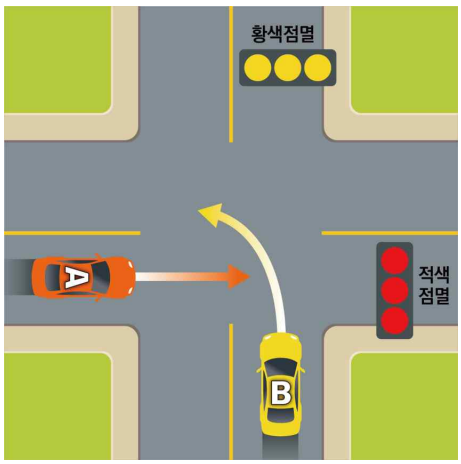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적색점멸 좌회전 차량(A) vs 황색점멸 직진 차량(B)



기본 과실	**A 80 : B 20**
사고 상황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시정지 및 양보의무가 부과된 적색점멸신호에 좌회전하려는 A차량은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황색신호 점멸 도로 진행하는 B차량도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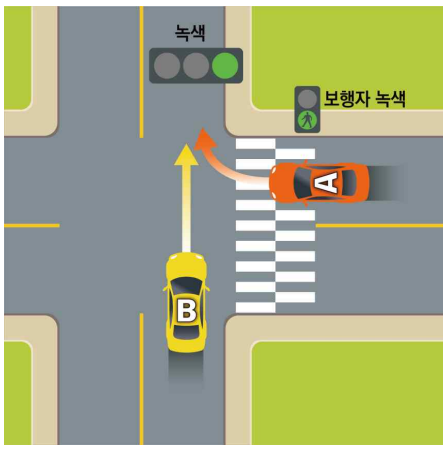
적색점멸 직진 차량(A) vs 황색점멸 좌회전 차량(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적색점멸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황색점멸 신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A차량은 여전히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황색점멸 신호에 진입한 B차량 보다 A차량의 과실을 무겁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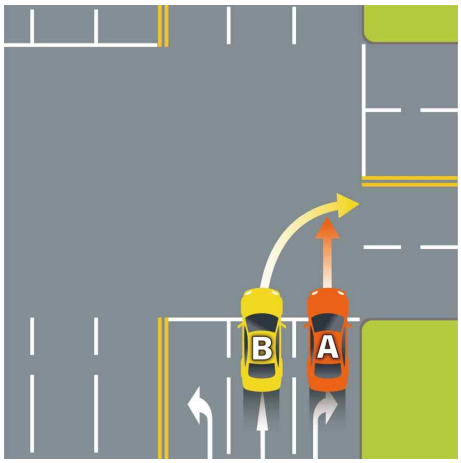
2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보행자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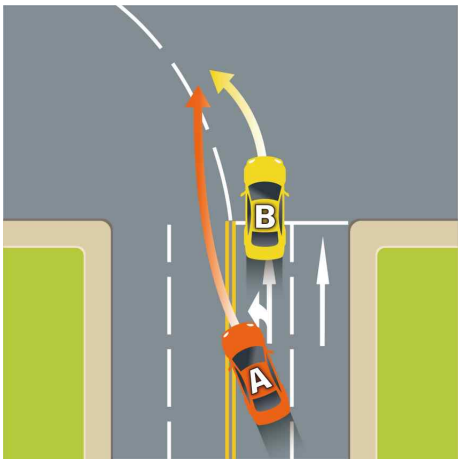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차(A) vs 녹색신호 직진 차량(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A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

노면 표시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차로 직진 차량(A) vs 직진 차로 좌회전 차량간 사고(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과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다만 B차량은 교차로 안쪽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함

(신호 없는 교차로)우회전차로 직진 차량(A) vs 직진 차로 우회전 차량간 사고(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과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됨 다만 B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우측차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함

중앙선 침범

(신호 없는 교차로) 추월직진(좌회전) 차량(A) vs 선행 좌회전 차량(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A차량이 이를 위반하였고,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B차량은 A차량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추월을 하리라는 점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

중앙선 넘어 좌회전(또는 유턴) 차량(A) vs 정차 후 후진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20 : B 80**
	사고 상황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정차 후 후진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유턴)을 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 또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믿고 좌회전(유턴)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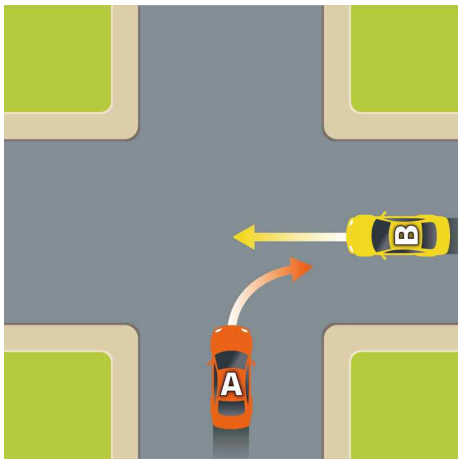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량(A) vs 우회전 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3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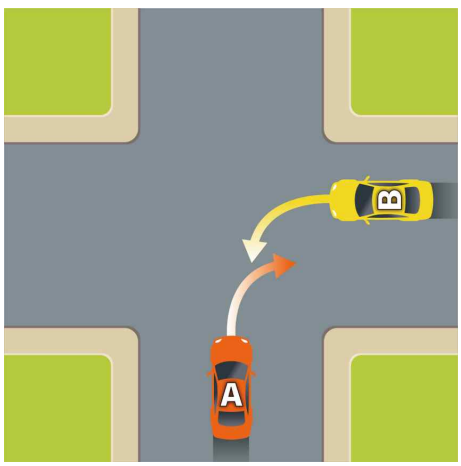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A) vs 우→좌 직진차량간 사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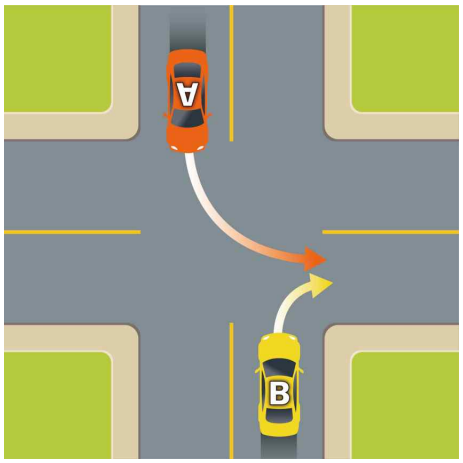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좌 방향으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또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B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차량(A) vs 좌회전 차량 간 사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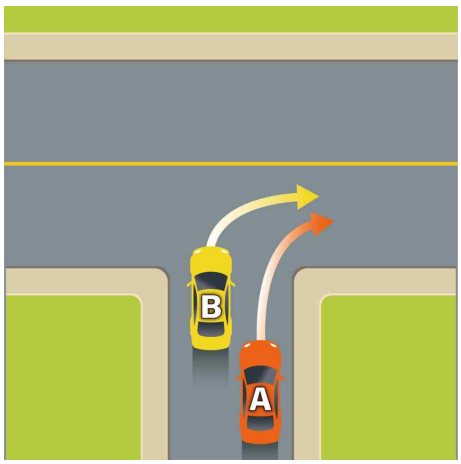
기본 과실	**A 50 : B 50**
사고 상황	신호기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 A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한편 B차량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도로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통행우선권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함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A) vs 맞은편 우회전 차량 간 사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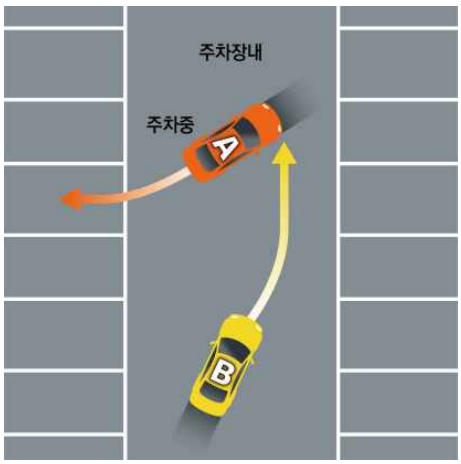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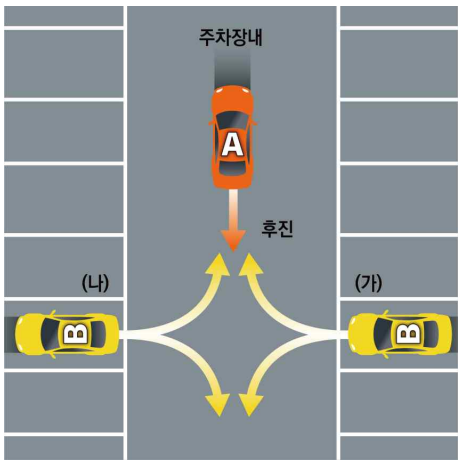
후행 우측 끼어들기 차량(A) vs 선행 우회전 대기차량 간 사고(B)
-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오는 동일차로 선후행차량 간 사고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선행 B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인 상태에서 후행 A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기하여 우회전(대기)하다가 선행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 (우측 공간이 좁은 경우).
기본 과실 해설	양 차량이 단일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 A차량이 우측으로 끼어들기 하여 우회전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선·후관계, 끼어들기 유사 사고**), 후방에서 우측으로 끼어들기한 A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70:30으로 정함. * 단, 양 차량이 안쪽(우측)과 바깥쪽(좌측)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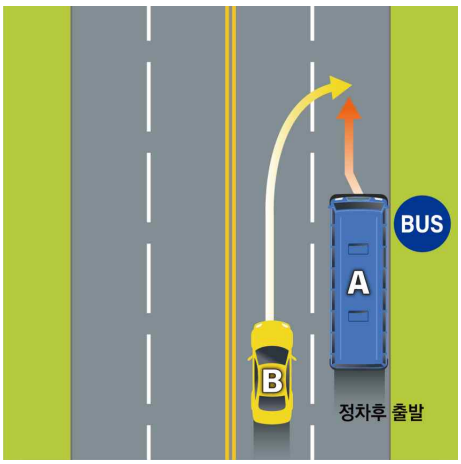
주차장 사고

선행 주차진행차량(A) vs 후행 추월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주차장에 선후행으로 진입한 후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A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하여 나아가려는 후행 추월 B차량이 접촉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인바, 선행 A차량의 주차구획 진입동작이 후행 B차량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작동, 후진등 점등 또는 선행 A차량의 방향상태 등)에 있음을 전제로 주차구획 진입동작을 우선시하여, 후행 B차량의 경우 주차공간을 물색하는 선행 A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항시 주차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잠시 양보하지 않고 곧바로 뒤따라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주차장 통로 후진차량(A) vs 전진(후진)출차 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40(35) : B 60(65)**
	사고 상황	주차장 내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 **(가)** 주차장 내 통행로에서 후진 중인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전진 출차하여 통행로로 진입하는 B차량 간의 사고로, 주차장 사고와 유사하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4를 준용하되, A차량이 통행로에서 후진중인 점을 감안하여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 **(나)**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5:65로 정함

진로변경 사고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A) vs 추월 차량 간 사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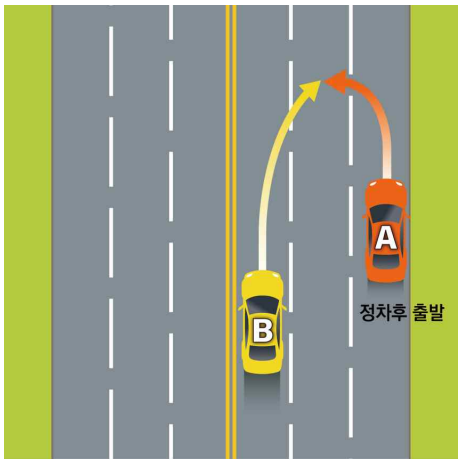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A버스를 추월하여, A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는 A버스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버스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B차량의 경우 양 차량 모두 주의의무가 있으나, ① 본 사고 유형의 경우 사고 지점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지점으로서, 정차 및 출발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차량의 정차 후 출발사고와는 사고 유형이 다르다는 점, ②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로서는 급제동시 승객의 상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즉각적인 제동조치 등이 어려운 점 등 감안,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중인 버스차량 앞으로 추월하며 진로변경하는 B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정차 후 출발차량(A) vs 진로 변경 차량 간 사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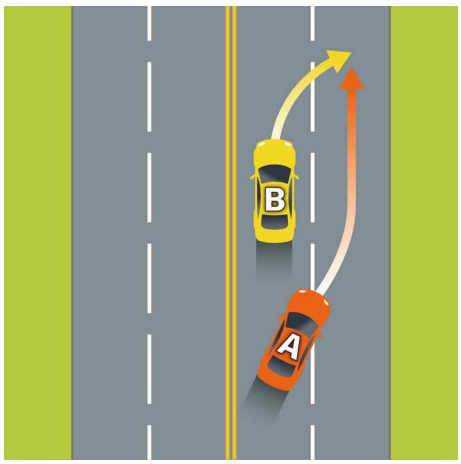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직선도로에서 B차량이 오른쪽 차로에 정차중인 A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B차량도 A차량의 정차사실을 신뢰한 채 운행하던 중이므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출발하는 선행 A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B차량도 정차 차량의 동태를 살필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정차 후 출발 진로변경 차량(A) vs 일반 진로변경 차량 간 사고(B)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주의의무 과실이 있으나,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차 후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일반 진로변경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70:30으로 정함

동일차로 후행차의 선진로 변경(A) vs 선행차의 후진로 변경 사고(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B차량이 진로변경시에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후행 A차량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후행하던 A차량도 선행하는 B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B차량을 추월할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함.

별 첨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 참여회사 : 총20개사(손해보험사 14개+공제사업자 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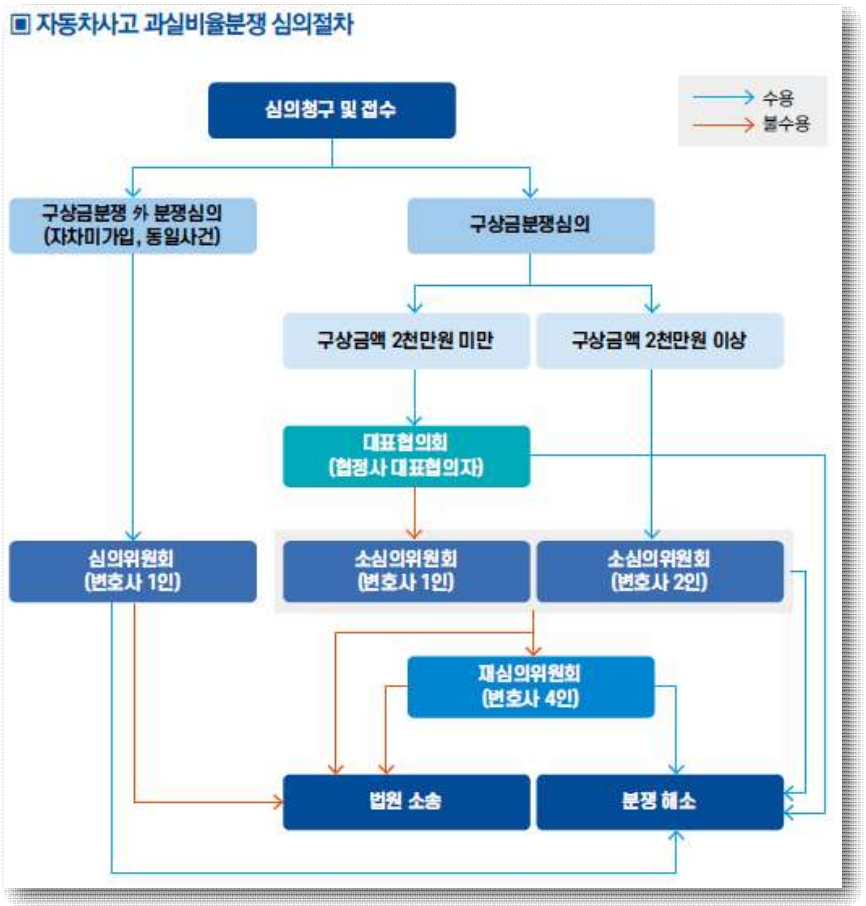
- '07년, 상호협정 인가 및 심의 개시 ('07.4.20, 15개 손보사)
- '19년, **분쟁심의 대상 확대**(소액건, 동일보험사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 '19년, 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 인정(大法)**

▣ 심의위원 : 45명(변호사 위촉)

▣ 연도별 분쟁심의 청구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청구건수	52,590건	61,406건	75,597건	102,456건	104,077건
증감율	20.9%	16.7%	23.1%	35.5%	1.6%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절차



☞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